

# 공유재산 사용료 · 대부료 감면

재무과 재산관리팀

055-860-3153

코로나19 관련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소정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일정기간 인하하여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## 감면대상

-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'직접' 사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

## 감면내용

- 공유재산 사용료를 1천분의 50(5%) -> 1천분의 10(1%) 적용  
※ 인하금액 최대 20백만원 한도

## 감면기간

- 2020. 2. 1.부터 2020. 7. 31.까지(6개월) 사용료

## 신청기간

- 2020. 5월부터 2020. 7월 말까지